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4월30310-가	전화번호 731-6240	전결규정 4 조 1항 국경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5. 6.		
보존연한	7월 6/13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계장	법 정 검 사 실 사 필	 
기안책임자	조근호 안 6 김용덕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제목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제1안 내부결재		
제1안 내부결재			
1.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결재와 같이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결정 요청이 있어 우리시			
'84년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84.6.29)에 상정			
심의가결되었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첨부: 관계서류 1건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을 다음			
과 같이 결정하였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고양군청 도시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6

서울특별시청

○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시설	통신시설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현천리 299-12외 128필지	498.911	

○ 결정 도면 : 별첨 도면 통신과 같은 (도면 생략)

제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 같 음

1. 우리시 도시 계획 시설 (통신시설) 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4안

수신 : 총무처장관 (시: 공보관)

발신 : 시(국)장

제목 : 관(시)보 게재 의뢰

1. 우리시 도시 계획 시설 (통신시설) 결정에 대
 한 관(시)보 게재를 별첨과 같이 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 시설 (통신시설) 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제20및 같은법시행령제65

라. 게재내용 : 별. 첨

첨부: 고시문사본 2(1) 부

제 5 안

수신: 국가안전기획부장

제목: 같 음

1. 귀부에서 신청하신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현천리 299-121외 128필지의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 6 안

수신: 경기도 고양군수

참조: 도시과장

제목: 같 음

1. 귀군 관내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오니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 7 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과장

제목: 같 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녹지과장 등

'84. 6.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3436

	최상근
	신영구
	도희영
	이동백
"	도철웅
"	여흥구
"	서상목
"	지홍원
"	이천수
"	김인식
"	최종무
"	김진호
"	최상근
간 사	도시계획과장
서 기	도시행정계장

5. 불참위원

위원장	이상연
위원	이광로
"	김경동
"	신동호
"	박상완
"	장현익
"	이 동

6. 기탁참석 : 시설계획과장, 구획정리과장, 재개발과장, 주택개량과계량1 계장.

도시계획위원회

· 성곡천

"

"

· 관악산자연공원

"

제5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 사당어린이공원

"

제46안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

가 결

제47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변경 및 결정

· 구로 제5어린이공원변경

"

· 소로 신설 2개로선

"

제48안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학교, 도로) 변경 결정 및 결정

· 국립경기장

"

· 체육대학 신설

"

· 체육중고교신설

"

· 길동 광장 - 과천면 시계 도로변경

"

제49안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결정

· 현천리 299일대

2. 도시계획위원회

최종무위원 도시계획소양하 용지 인출권 결정

위원장 원안대로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일 동 동의 (가결)

(제6안)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학교, 도로)변경 결정 및 결정

- 국립경기장 변경
- 체육대학 신설
- 체육중고교 신설
- 길동광장 - 과천면 시가간 도로위차 있는 변경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일 동 동의(가결)

(제7안)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결정

- 현천리299일대 통신시설 결정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김형만위원 원안대로 결정해도 좋겠습니다.

일 동 동의 (가결)

- 가락동 192구획 일대 통신시설 결정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일 동 동의 (가결)

(제8안)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도로)변경 결정 및 결정

- 일원동 47일대 종합의료시설 결정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호휘영위원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은?

시설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호휘영위원 병상수1,000개인데 6만여명의 대지가 필요합니까?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이기 때문에 대규모 면적이 필요합니다.

김진호위원 소위원회에서 상세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일 동 동의 (소위원회 위임)

도시계획위원회	
검수	경유
	<i>[Handwritten Signature]</i>

과	관	국	장	부	시	장
	3-	712		68		<i>[Handwritten Signature]</i>

2. *[Seal]* *[Handwritten]*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상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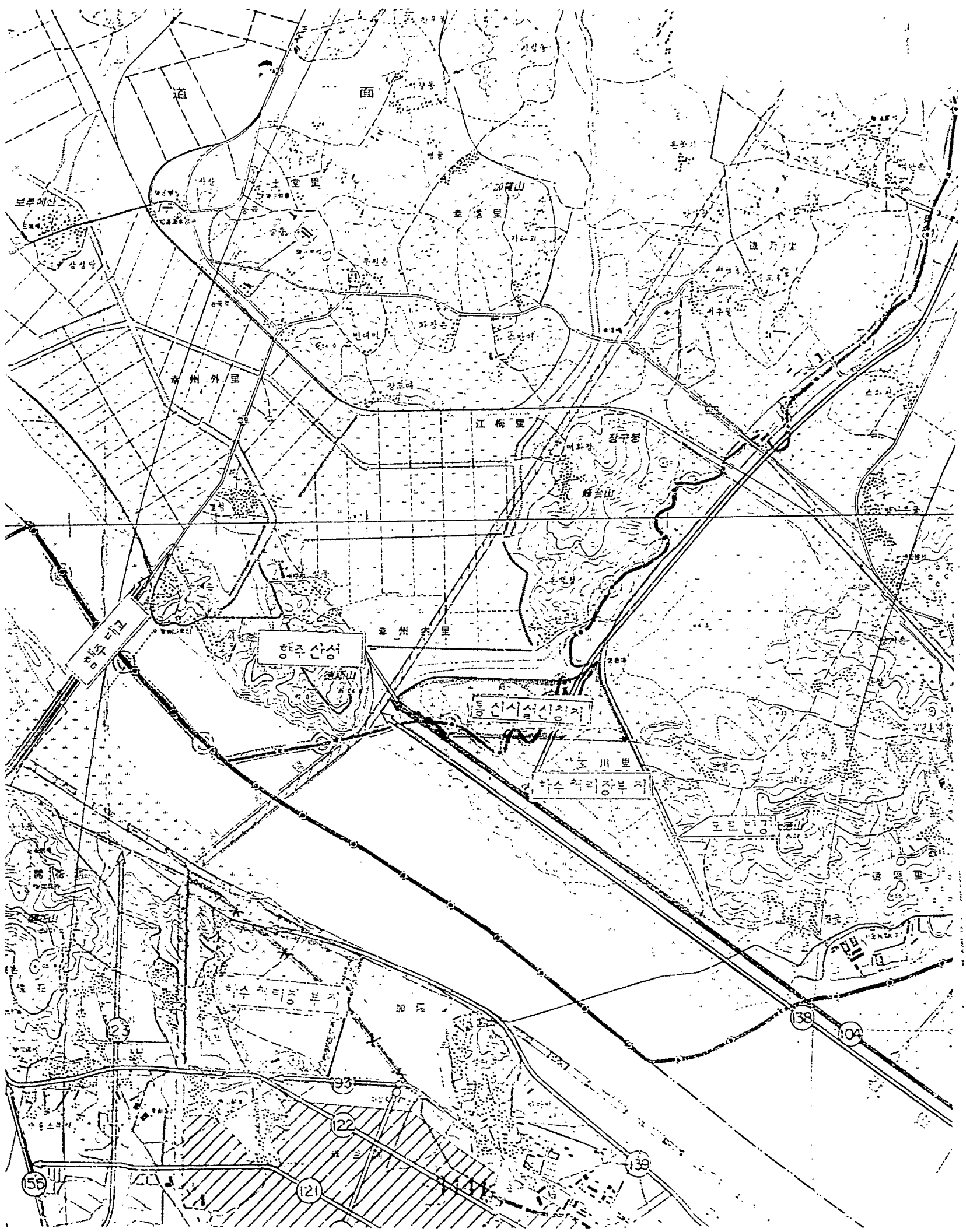
[Seal]
1994.6.13
시장

1. 안건명 : 도시개발사업 (통신시설) 결정
2. 내용 (위치, 규모, 내용 기타)

구	본	시	설	명	의	치	면적 (M ²)	비고
신	설	통신	시설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현천리 299-131의		498,911	
					12-필지		(...)	

3. 현재의 도시계획 상황
개발제한구역, 농지지역
4. 상정사유
공공업무수행에 의하여 통신시설 결정조치함
5. 도시계획 변경 통폐규정 등 관련법규 검토사항
6. 기타 (도시개발법 제 68조에 의한 참석자 안적사항 등)

첨부 : 1. 위치도 (1/5,000 - 1/25,000)
2. 상세도 (1/1,200 - 1/3,000)
3. 관련서류 (법규 또는 방침서)



江

50077

행주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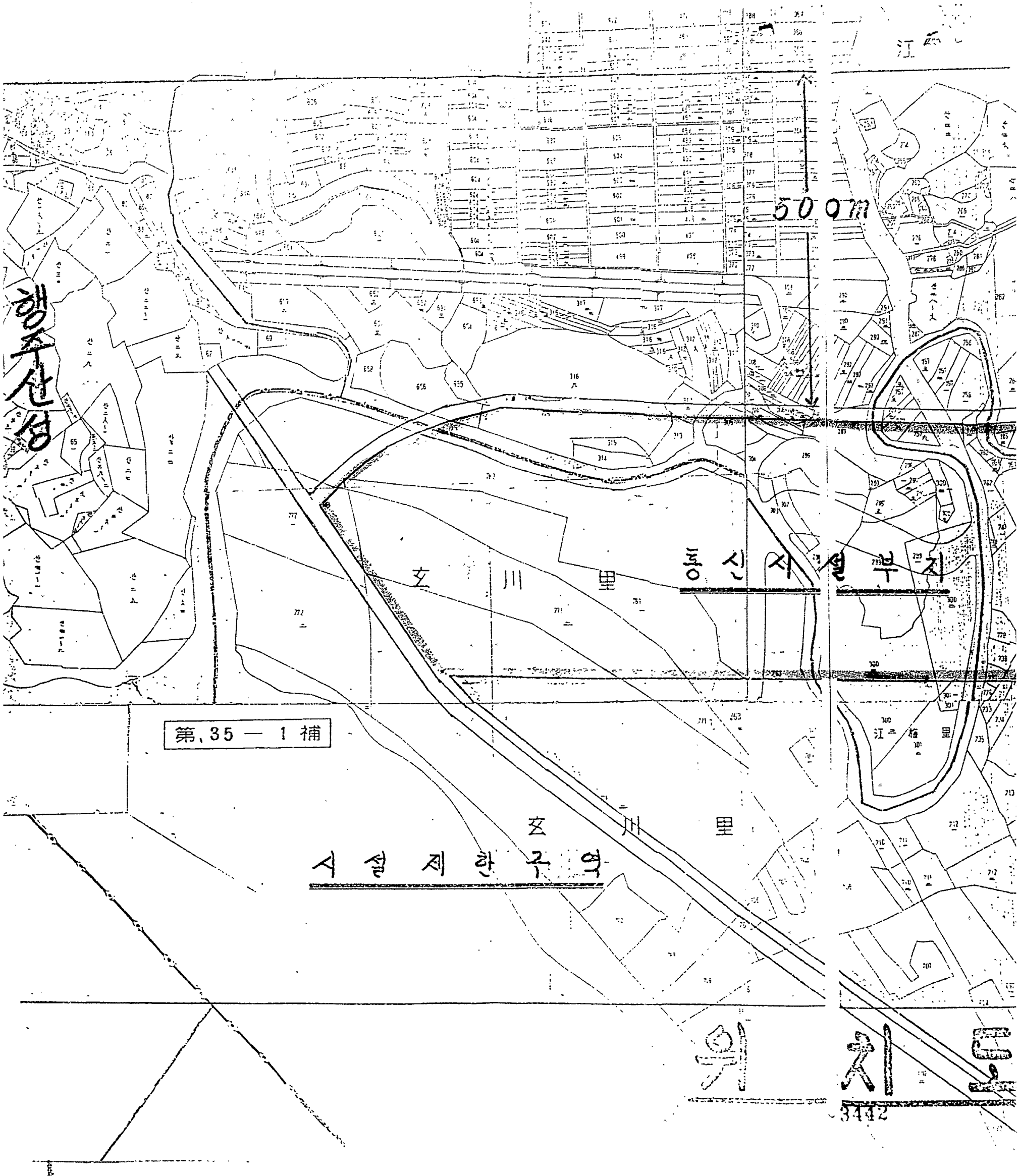
호신지영부지

第 35 - 1 補

호신지구역

위 치 도

3442



50071

신지부지

반지하수처리장

위치도

3442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결정요청내용 검토 보고

1. 요청사항

- 가. 의 건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현천리 299-1 외 12필지
- 나. 신청인 : 국가안전기획부함
- 다. 사업내용 : 부지면적 - 493,911^{M²} (150,920^평)
 - 세부시설 } -타의비
 - 사업추진계획 }

- 라. 도시계획사항 : 도시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403
 - 경기도 고양군 503
 - 행정구역 - 경기도 고양군
 - 개발제한구역
 - 농지지역

2. 추진경의

- 14. 3. 29 :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결정요청(안기부 → 서울시)
 - 경기도 고양군의 의견 서울시 통보
 - 요청(안기부 - 고양군) -

1994.6.13
시정

○ 24. 5. 7

- : 도시계획시설(통신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
통보(고양군 → 서울시)
 - 내용 : 시설 결정 동의
 - 양주산성부근 주변경관이 적지되지 않도록 조치 요청
 -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이와의 잔여 토지는 현재 경작자가 임대영양가 농토로 조치

○ 24. 5. 13

- : 통신시설 결정에 따른 노안 요청(서울시 → 고양군)
 - 개발제한구역 협의결과 여부
 - 농지전용 협의 여부
 - * 경기도에서 공변부심의 협의중

○ 24. 5. 24

- : 통신시설 부지 면적조정통보(안기부 → 서울시)
 - 기요청 : 493,911^{M²}
 - 조정요청 : 493,911^{M²} (증 27,332^{M²})
 - * 면적 산출 추오

1994.6.13
시정

3. 강 토 사 항

- 2개의 도시계획구역에 의치하여 경기도 고양군과 협의 완료
- 안기부 : 서울시역서 결정 요망
- 개발제한구역 밖 양의척가 및 농지전용 협의는 관련부서와 협의소진
- 근사시설 보호구역 관계는 신청부서에서 별도 추진
- 남지학수 처리장 부지는 사전 안기부와 협의 완료
(12.1/4분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 건설부에 결정 요청)
- 산청지대 도시계획도로 (중 1-127호선 : 폭 20M) 변경 병행 추진

4. 조 치 계 획

- 고양군 요구사항에 따라서는 국가기획위원회 통보하여 검토 협의
토록 조치
- 2/4분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결정
- 농지전용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협의완료후 결정고시

1992.0.18
시장

* 참고 사항

부지 소유자 내역		증	129필지	428,911 (150,920평)
[국유지	51 "		397,045 ^{M²} (120,106평) 79.5%
	사유지	53 "		101,866 ^{M²} (30,814평) 20.4%
[국유지	학 전		300,354 ^{M²} (118,233평) 93.4%
		합종지		4,191 ^{M²} (1,273평) 1.0%
[사유지	전		71,492 ^{M²} (21,623평) 70.2%
		답		5,354 ^{M²} (1,771평) 5.7%
		학 전		14,750 ^{M²} (4,462평) 14.5%
		합종지		9,778 ^{M²} (2,958평) 9.6%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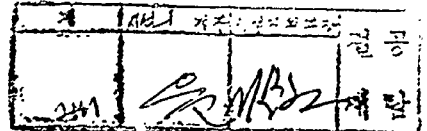
도시 442 -

1984. 5. 7.

수신 서울특별시

참조 시설계획과장

제목 도시계획 시설(통신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통보



1. 홍시 920 - 232(24. 3. 20)호와 관련임

2. 안기부에서 본군 현천리 입원에 설치계획인 도시 계획 시설(통신시설) 결정에 따른 본군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아 락

가. 본사업이 국가 공공사업으로 시행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시설 결정에 동의 하오며.

나. 사업시행영역구역내 일부가 본군의 원농포시계획상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되나 도시 계획상 특별한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며 귀시의 도시 계획 도로인 중도 127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난지 하수 종달 거리장이 인접해 있어 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사에서 일괄 시설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주산성 부근 주변경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토지 비수액 다른 보상금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고 국공유지 입 단경작작 및 사유지 경작자에 대한 실농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권입부지중 직접 시설물이 설치되는 부지 이외의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현직 경작자가 임대 경작이 가능 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